

제1차산업경제위원회  
2012.10.10 (수) 10:00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산업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송장섭

#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발의자 : 윤성옥 의원 외 6명

2.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

가. 발의일자 : 2012년 9월 24일

나. 회부일자 : 2012년 10월 4일

3. 제안 이유

- 도내에 투자하려는 국내·외 기업 및 공공기관의 이전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지역내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운용중인 조례를 지식경제부의 고시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국내복귀기업' 용어의 정의 신설(안 제2조)

나. 상시고용인원 근로기간 변경 : 3개월간→1년간(안 제2조)

다. 투자기업의 이행여부 및 사후관리 강화(안 제36조)

라. 지원 등의 취소 기간 변경 : 7년→5년(안 제37조)

5. 검토의견

-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내에 투자하려는 국내·외 기업 및 공공기관의 이전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지역내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경

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운용중인 조례를 지식경제부의 고시 개정  
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하는 것으로써 조례 개정은 타당함.